

대학평의원회 제52차 회의록

회의일자 : 2018.12.21

1. 회의 일시 : 2018년 12월 21일 13:00
2. 회의 장소 :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강홀 4층 대회의실
3. 위원 정수 : 11명
4. 재적 위원 수 : 11명
5. 참석위원 : 박영철, 김종관, 이종원, 최연배, 이주원, 안광우, 송용우(이상 7명)
6. 불참위원 : 조계형, 황봉성, 이상희, 남금미(이상 4명)
7. 회의안건
 - 가. 자문안건
 - 제1호 안건: 2018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 자문의 건
 - 제2호 안건: 2018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 자문의 건
 - 나. 기타안건
 - 제1호 안건: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개정의 건

8. 회의내용

성원보고 : 간사가 위원 정수 11명 중 7명이 참석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'제7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'에 의한 의결 정족수가 되었음을 보고하다.

개회선언 : 박영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.

전차 회의록 채택 :

박영철 의장 : 간사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여 줄 것을 부탁하다.

송용우 간사 :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다.

박영철 의장 : 회의록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회의록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니, 최연배 위원의 동의와 안광우 위원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전차 회의록을 채택하다.

가. 자문 안건

제1호 안건: 2018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 자문의 건

박영철 의장 : 자문안건으로 제1호 2018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의 건을 상정하며, 지난 8월에 이어 2차로 추가경정 예산(안)을 편성하는 배경과 내용에 대해 산학예산처 실무자인 김철규 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
김철규 팀장 : 학교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됨과 각 회계의 추경예산(안) 편성 배경을 설명

하고, 준비한 회의자료를 토대로 2018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다.

박영철 의장 : 등록금회계에서 특별히 추가 보고할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.

김철규 팀장 :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등록금회계에서 전출금을 당초 1억원 대비 5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6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.

김종관 위원 : 전출금을 특별히 증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.

김철규 팀장 : 등록금회계에서 시설관리비 등에서 예산이 절감되었음을 설명하다.

김종관 위원 : 미사용이월자금을 편성하는 기준은 있는지 묻다.

김철규 팀장 : 미사용이월자금은 ^{1.0}~~2.5~~%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으며, 기준 범위 에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.

박영철 의장 : 2018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(안) 자문의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종원 위원의 동의와 김종관 위원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. 순차정정
동용우

제2호 안건: 2018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 자문의 건

박영철 의장 : 자문안건 제2호 2018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의 건을 상정하며, 산학예산처 실무자인 김철규 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
김철규 팀장 : 2018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에 대해 준비한 회의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설명하다.

김종관 위원 : 기숙사 시설개선비용은 학생들이 내는 기숙사비를 사용하는 지에 대해 묻다.

김철규 팀장 : 기숙사 시설개선비용은 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여, 등록금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다.

박영철 의장 : 2018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(안) 자문의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최연배 위원의 동의와 안광우 위원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.

나. 기타 안건

제1호 안건: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개정의 건

박영철 의장 : 기타 안건으로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개정의 건을 상정하며, 교무처 실무자인 송용우 위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
송용우 위원 : 회의자료를 토대로 지난 4월에 본 회의를 통해 규정을 개정한 이후에 대내외 상황 변화와 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다.

최연배 위원 : 이번 회의에서는 규정 개정(안)을 심의하는 것은 아닌지 묻다.

송용우 위원 :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만 드리고 차기 회의에 개정(안)을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할 예정임을 설명하다.

이종원 위원 : 보직교수는 대학평의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지 문의하다.

박영철 의장 : 보직교수는 위촉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을 설명하다.

폐회선언 : 박영철 의장이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이주원 위원의 동의와 최연배 위원의 재청으로 폐회를 선언하니 13시 30분이었다.

위의 사실을 확인함.

2018년 12월 21일

의 장 박 영 철

위 원 김 종 관

위 원 최 연 배

위 원 이 종 원

위 원 이 주 원

위 원 안 광 우

위 원 (간사) 송 용 우

붙임: 1. 제5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